

2023

소상공인분야 **시책설명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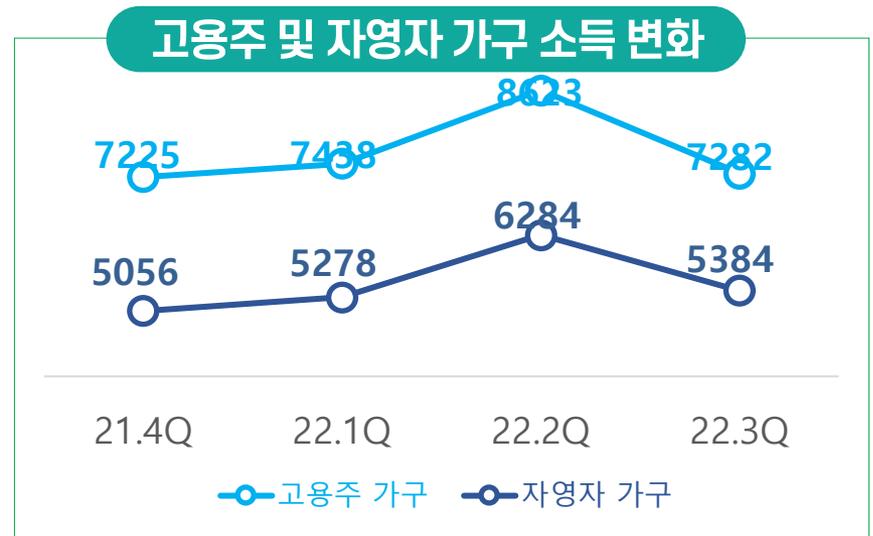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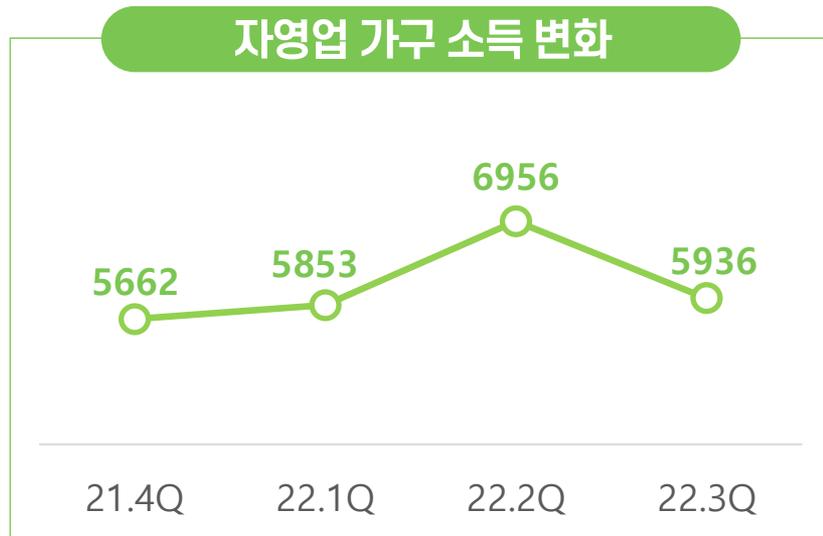
- 1 소상공인 현황
- 2 2023년 중점 추진방향
- 3 생애주기단계별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
 - 소공인 특화 지원
- 4 사업별 공고 일정 및 문의처



1. 소상공인 현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성 개선 필요

✔ '21년 거리두기 개선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 소득 개선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1년 개인사업자 폐업자수는 82만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

▪ 폐업자 수(만명): ('16) 84.0 ⇒ ('17) 83.8 ⇒ ('18) 83.1 ⇒ ('19) 85.3 ⇒ ('20) 82.8 ⇒ ('21) 81.9

* 개인사업자 기준(국세통계연보)

✔ 경쟁심화가 소상공인 사업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20,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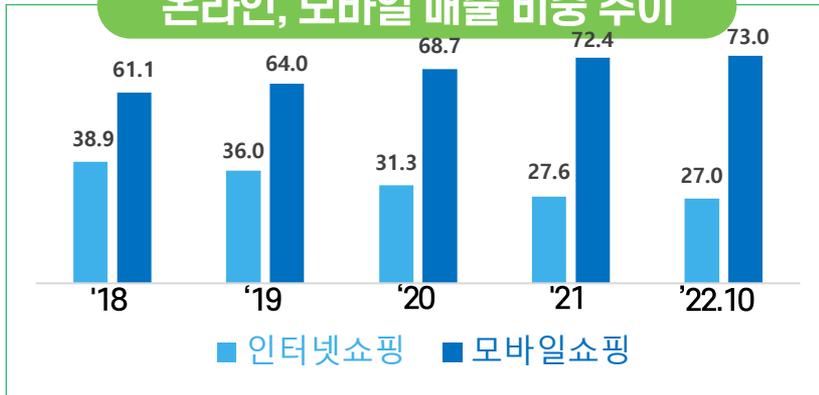
▪ 경쟁심화 38.3%, 상권쇠퇴 37.7%, 원재료비 28.5%

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온라인, 모바일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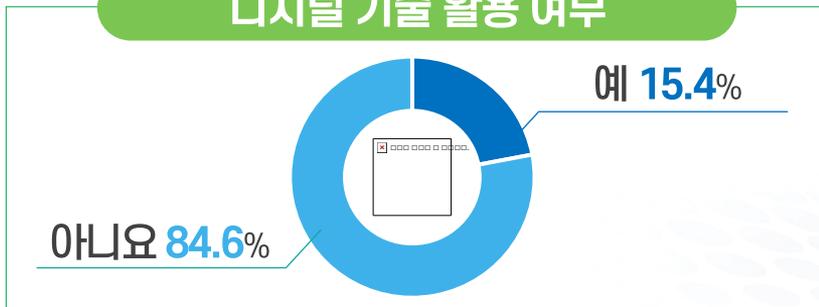
대면 및 비대면 결제 비중



* 한국은행, 2021년 지급결제동향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상공인 준비 부족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성 대두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



디지털 활용기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

2. 2023년 중점 추진방향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 육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 ✓ **경영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설 및 간소화 (저신용 자금 신설, 3종 11개 자금 간소화)
-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폐업 예방·지원 중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확대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구축
- ✓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1인 소상공인 → (확대) 모든 소상공인

소상공인 체질 개선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혁신허브 개편 및 강한 소상공인 선발
 - 동네편당, 매칭융자 등 투·융자 인프라 신설
-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전국 스마트상점·공방 7천 개 보급
 -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 확대
- ✓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 마케팅, 교육, 인력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해결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3

「생애주기단계별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3. 소상공인 재기 지원
4. 소공인 특화지원

3-1. 소상공인 창업 지원

1 상권정보시스템

✓ 국세청 등 민관 기관 협업 데이터로 창업예정지의 경쟁 및 입지분석 정보 제공

내용

상권분석 서비스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시설 등 상권분석 정보 제공

경쟁분석 서비스

업소별 경쟁영역 내 거래건수를 기반으로 경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안전-주의-위험-고위험 경고등 형태로 표시)

입지분석 서비스

특정 입지에 대한 45개 표본 업종별 입지 가치 (예상매출액)의 평균을 종합하여 평가한 입지 등급 정보 제공

창업기상도

5개 대표 업종에 대해 유동인구·매출액을 기반으로 창업 위험도 예측 정보 제공
(5대 업종- 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미용실)

매출 예측 서비스

상권 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심 지역의 예상 매출 정보 제공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업종 현황·잠재 고객 정보를 카카오톡, 문자, 메일로 매월 제공

이용방법

상권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http://sg.sbiz.or.kr>)

3-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대상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규모



500명 내외

내용

창업교육



창업을 위한 기초 및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

점포체험 및 멘토링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멘토링 지원

사업화 지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매장 리모델링, 마케팅, 홍보비 등)
(최대 40백만원 한도, 자부담 폐지)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

✓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교육**: 수요자 선택 방식의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바우처 방식) 지원 및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교육 실시 *(2021년) 자부담 10%, 국비 90%(최대 50만원) . 연2회
- **컨설팅**: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
- 컨설턴트 교육 강화 등으로 표준화된 양질의 컨설팅 제공

✓ 금융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및 정책자금 구조 간소화

-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설(한도 3천만원, 금리 : 2%)
- **정책자금 구조 간소화**: ('22) 4종 20개 프로그램 → ('23) 3종 11개 프로그램

구 분		예산 (억원)	지원 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5,000	일반소상공인 (자금별 상이)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	저신용 소상공인
	취약계층 자금	5,000	고용산업 위기 지역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등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6,000	소공인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4,500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1,100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 소상공인
	민간투자매칭자금	400	민간투자자의 투자편당을 받은 소상공인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규모



30,000억원 지원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10인 미만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이내 (5년), 시설자금 5억원 이내 (8년)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4~0.6%p
- **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2~0.4%p
- **특별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위기지역/저신용자 소상공인
- 7천만원 (일부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2~0.6%p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 소상공인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2~0.6%p
- **스마트 자금** : 혁신형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스마트설비도입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이내 (5년), 시설자금 5억원 이내 (8년)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2%p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2 소상공인 경영교육

- ✔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매출증대, 경영성과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문기술 및 경영개선 교육 제공

대 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교육신청 당시 휴폐업 또는 사업 참여제한자,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규 모



70,000명 내외
(오프라인 2만명, 온라인 5만명)

내 용 **바우처 방식의 전문기술 습득교육**: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교육 지원 - 교육비 지원: 민간 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온라인 실시간 교육: 업종별·대상별·수준별로 매주 정기적인 시간대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쌍방향 교육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http://edu.sbiz.or.kr>), 무료)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3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

대 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보유자)

규 모

 5,000개 내외

내용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및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 등
-수행: 전문 컨설턴트 / 기간: 4일 이내 / 지원조건: 자부담금 10% 이내

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

대 상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규 모

 약100개 조합 내외

내용 **협업사업** : 브랜드/마케팅/장비/R&D/네트워크 등 협동조합의 역량, 유형별 맞춤형 지원
판로지원 : 판매전/전시회 참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마케팅 교육 등 지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협동조합의 이해, 협업사업 비즈니스 모델, 조합설립 및 운영방법 등 협업교육과 컨설팅 지원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5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수 있도록 지원

대 상



백년가게: 단일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
백년소공인: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
기술 기반 소상공인

규 모



전국 **150**개 내외 업체

내용 홍보, 판로지원, 시설지원, 컨설팅 등 지원

6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경영·서비스 혁신

대 상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규 모



스마트상점 **5,600**개 내외
(경험형마켓 100개 포함)

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AR/VR, 3D, AI·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



스마트미러, 서빙·조리로봇 등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술

상점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 30% 예정

경험형마켓



스마트슈퍼에 특화된 무인화스마트기기 및 설비
공간 구축

상점당 최대 25백만원, 자부담 20% 예정

3-2. 소상공인 성장 지원

7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

대상



온라인 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규모



6만개 내외 업체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수수료 지원*

*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TV홈쇼핑·온라인몰 등 진출지원, 기반마련, 라이브커머스 등

8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 소상공인을 위한 0%대의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대상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방법

온라인 : 제로페이 홈페이지 (www.zeropay.or.kr)

내용

▪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결제수수료율: 연 매출액 8억원 이하(0%), 8~12억원(0.3%), 12억원 초과 (0.5%)

- 소상공인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1.2% 적용

▪ 소비자: 30%의 소득공제, 모바일 온누리(40% 공제) 및 지역사랑 상품권, 경품 및 리워드 이벤트 등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

대 상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규 모



37,000건

내 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최대 250만원, 부가세 제외)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 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 **취업 교육** : 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 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최대 100만원)
- **재창업 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지원
- **재창업 멘토링** : 마케팅, 경영, 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 (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2,000만원)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경감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대 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규 모



25,000명

내 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5~7등급 20% 보험료 환급 지원

1등급

월 20,475원
(보험료 40,950원 * 50%)

2등급

월 23,400원
(보험료 46,800원 * 50%)

3등급

월 15,795원
(보험료 52,650원 * 30%)

4등급

월 17,550원
(보험료 58,500원 * 30%)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go.sbiz.or.kr) 신청

참 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를 4~7개월간 지급 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

3-4. 소공인 특화 지원

1 판로개척지원

✓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의 온·오프라인 몰 입점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규모 전국 220개사 내외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내용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온라인마케팅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카탈로그,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TV광고영상 송출비 지원

2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규모 스마트공방·제품 기술 사업 1,500개사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내용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3-4. 소공인 특화 지원

3 클린제조환경 조성

✓ 소공인 작업장 내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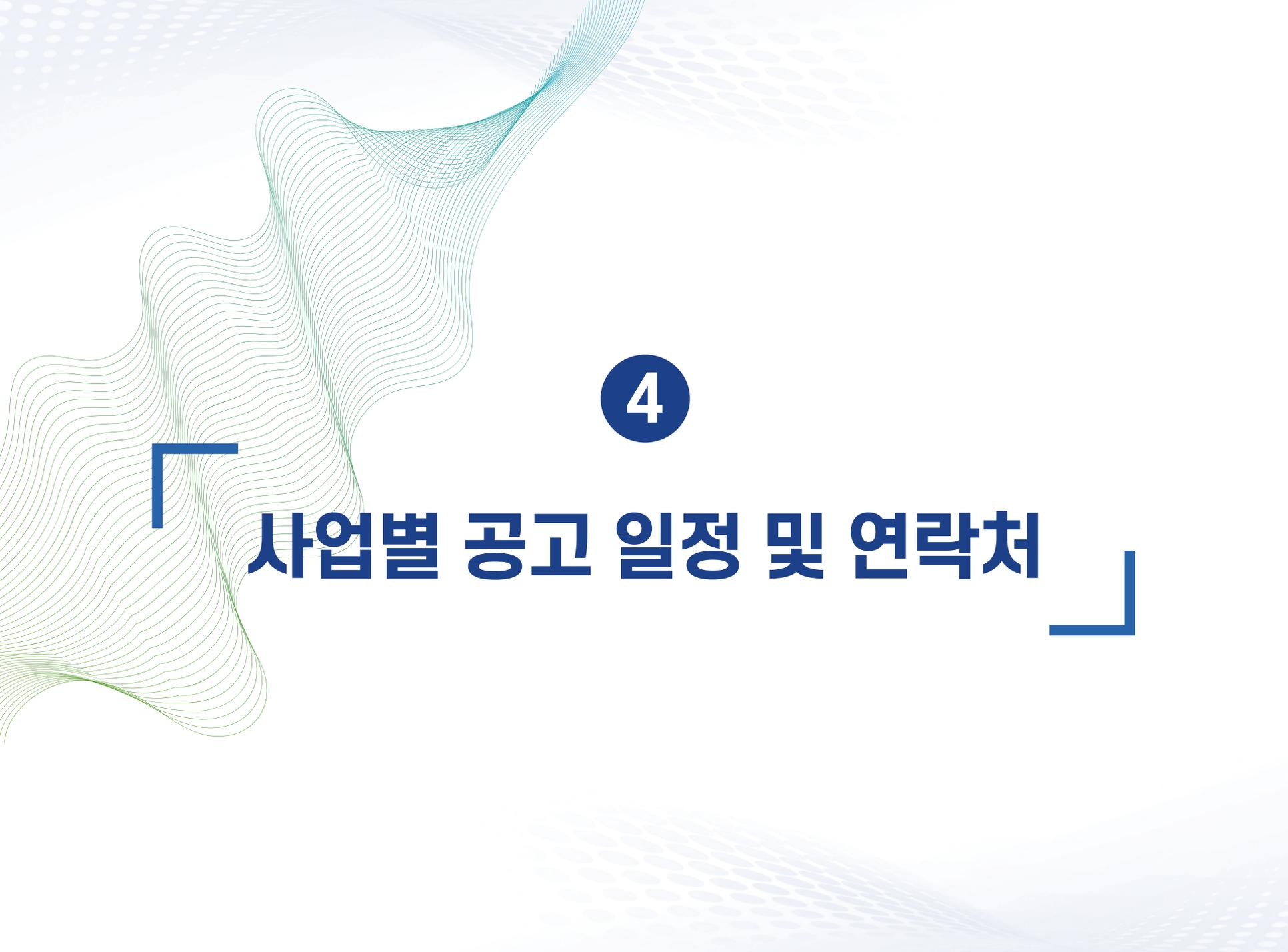
규모



전국 2,000 개사 내외

내용

지원항목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개선	▪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
근로환경 개선	▪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
안전 조치	▪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 지원



4

「사업별 공고 일정 및 연락처」

4-1. 사업별 공고일정

사업명	공고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22.12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3.2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23.2월
소상공인역량강화	'23.2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3.1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23.2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22.12월
희망리턴패키지	'22.12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2.12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수시접수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23.1월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23.1월
복합지원센터 구축	'23.1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23.1월

사업명	공고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3.1월
주차환경개선	'22.5월 ('23년 후보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22.9월 ('23년 후보시장)
청년상인 육성	'22.9월 ('23년 후보시장)
화재공제	수시접수
화재알림시설 설치	'22.9월 ('23년 후보시장)
상권활성화	'23.6월 ('24년 후보시장)
시장경영패키지	'22.9월 ('23년 후보시장)

4-2. 문의처

	사업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 상 공 인	소상공인정책자금	044-204-7523	042-363-7203, 720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44-204-7837	042-363-7846, 7847
	소상공인 경영교육	044-204-7837	042-363-7811, 7821, 7822
	소상공인 역량강화	044-204-7837	042-363-7833, 783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044-204-7885	042-363-7711~4, 7720~5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044-204-7887	042-363-7981, 7984, 798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044-204-7281, 7284	02-6678-9452 (중소기업유통센터) 042-363-783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044-204-7872, 7876	(상점) 042-363-7804, 7807 (마켓) 042-363-7810, 7811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044-204-7873, 7877	042-363-7802, 7803

4-2. 문의처

	사업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044-204-7883, 7884	042-363-7908~9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044-204-7883, 7884	042-363-7914
	복합지원센터 구축	044-204-7883, 7884	042-363-7922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044-204-7883, 7884	042-363-7923
	희망리턴패키지	044-204-7859, 7860	042-363-7850, 7823, 7839, 7869
	1인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044-204-7859, 7860	042-363-7838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042-481-7857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4-2. 문의처

	사업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 통 시 장	시설현대화	044-204-7900	
	주차환경개선	044-204-7892	
	특성화시장 육성	044-204-7893	042-363-7622, 7783
	청년상인육성	044-204-7893	
	화재공제	044-204-7900	042-363-7976, 7789
	화재안전점검	044-204-7900	042-363-7771, 7775
	화재알림시설 설치	044-204-7900	042-363-7771, 7974
	상권활성화	044-204-7867, 7868	042-363-7774, 7775, 7779
	시장경영바우처	044-204-7893, 7896	042-363-7635, 7865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CONTENTS

1	납품대금 연동제란 01
2	추진 경과 02
3	시행시기 및 적용례 03
4	적용대상 거래유형 04
5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06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09
7	법 위반 시 제재 14
8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9
9	참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예시 21
10	Q&A 23

1

▶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2

추진경과



▶ 시범운영('22.9. ~)

- '22년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 '22년 12월까지 총 388개사 참여
(위탁 47개사, 수탁 341개사)
- 371건의 연동 약정 체결

▶ 국회 본회의 통과('22. 12. 8.)

▶ 법률 공포('23. 1. 3.)



3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23년 10월 4일 시행

➤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부터 적용



4

적용대상 거래유형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기업

물품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제조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것

※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수탁기업 위탁 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

수탁기업 (중소기업)

4

적용대상 거래유형



>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A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Q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A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5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

(ex) 1차 금속 제조업(C24)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 구체적 기간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7월)

5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

- 구체적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7월)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Q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이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탈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요구,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정)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7월)

➤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본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물품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예시) 동 케이블, Wire Rope

> 주요 원재료

-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예시)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Wire Rope에 사용되는 “경강선재”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조정요건

-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 변동률의 범위는 $\pm 0\sim 10\%$ 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예시) $\pm 3\%$ 이상, $\pm 1\%$ 이상



Q

상승 시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상승과 하락 시 모두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음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기준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Q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다음과 같은 가격정보를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음

-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③ 그 밖에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

$$\begin{array}{|c|} \hline \text{변경 단가} \\ \hline \text{(원/EA)}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기존 단가} \\ \hline \text{(원/EA)}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품목별 변동가격* (원/Kg)} \\ \hline \times \\ \hline \text{품목별 소재중량 (Kg/EA)} \\ \hline \times \\ \hline \text{반영비율 (100\%)} \\ \hline \end{array}$$

* 품목별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 기준시점의 품목 기준가격(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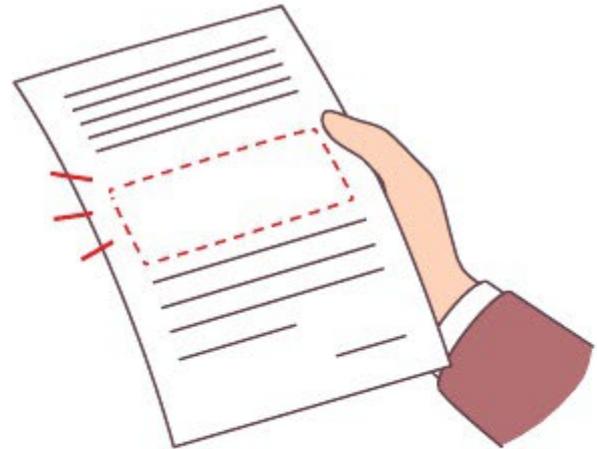
7

법 위반 시 제재



➤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 개선요구,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예시

- ▶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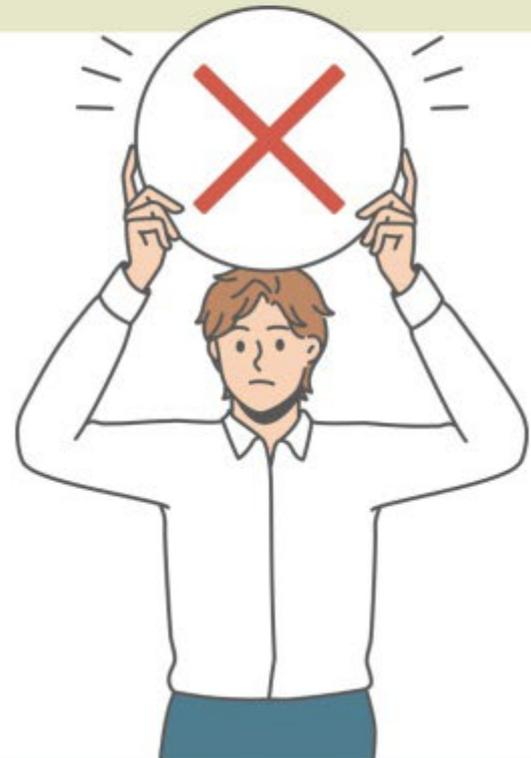
- (예시)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 ·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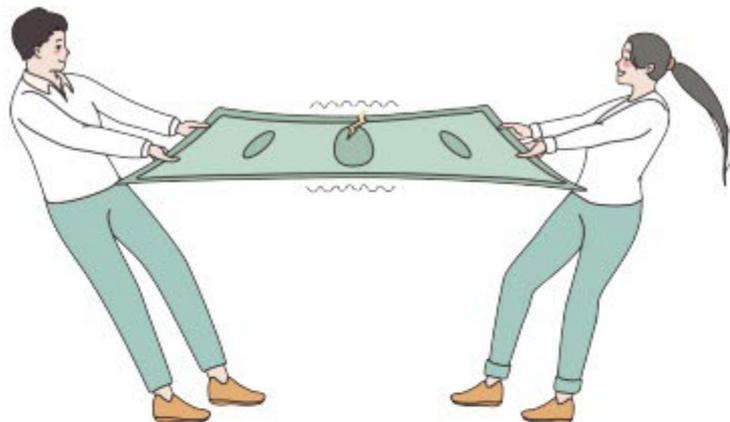
-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연동 대금 미지급

-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 가능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모집공고 예정)

- (동행기업)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
-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장관표창,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평가,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범위반 점수 감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 추후 확대 정비 예정



8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연동제 설명, 원재료 가격정보 확인 기능 등을 탑재

▶ 컨설팅 제공

- 연동조건 협의 및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구성
- 온라인 · 방문상담 및 교육 등 제공

▶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 배포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탁-위탁기업(약칭)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형 (별첨)

(제정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납품단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항(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유통을 의미(의)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유통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원천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요 원재료"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본인재료, 회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주요 원재료의 단량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최근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수"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수기를 말하며, "조정달"이란 그 조정 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달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시점"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9.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상생협력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①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실적,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값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합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중을 정할 때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정요청 및 기술자료 요청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4조(납품대금 변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별첨】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이하 "별첨"이라 한다)에 따라 조정된다)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최근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 ② 위탁기업은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4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별첨】 "납품단가 연동표" (이하 "납품단가 연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인자서명)을,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밀일인한다.
- ④ 제4항에의 홀수고와 "납품단가 연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당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연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 ⑥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위탁거래형의 시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판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항)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형 기간 동안 유효하다.

-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적용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형, 제2조제2항공유형" 연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④ "별첨"은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서명/서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별첨, 및 "납품단가 연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당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밀일인한 후 각각 1부를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상호 또는 명칭:
대표인명:	대표인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서명:	(인) 대표자 서명:
서명지(법인인명소):	(인) 서명지(법인인명소):

9 참고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예시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종류 명칭	도 케이블(CC-000)
2.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회출판 발행 LMC 공식개편기준금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최근 대응 변경이 있었던 조달일(또는 낙찰 체결일)의 전 분기(월말) 비교시점: 조달일(또는 분기)당분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 분기 첫 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일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총 기준가격 - 기준시점 총 기준가격) × 반영비율(30%) ÷ 총 중량(1ton)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종류 명칭	Wire Rope(W-000)
2. 주요 원재료	강철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최근 적용한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비교시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일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평균상대 기준가격 × (조정일 평균상대) + 500,000원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